

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05
----------	------

2016년 3월 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6년 2월 11일
- 다. 회부일 : 2016년 2월 15일
- 라. 상정일 :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16년 2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태웅)

가. 제안 이유

- 1) 서천연수원은 서울시 직원의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과 직원 및 가족의 휴양시설로 개원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아 해 왔으며 2016. 5. 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,
- 2)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
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위탁기간 : 2016. 6. 1 ~ 2019. 5. 31(3년)
- 소요예산 : 연 2,085,240천원 (월 173,770천원)
 - 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다. 시설현황

-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
- 부지면적 : 97,684㎡
- 건물면적 : 연면적 18,925㎡, 3개동
- 연수시설 : 객실(151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장, 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매점, 식당 등

라. 주요 위탁내용

-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
- 연수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지원 운영 등

마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

바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연수원은 기관(부서)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시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인 바
-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(2016년5월31일)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서천연수원 현황

- ①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
- ② 부지면적 : 97,684m²
- ③ 규 모 : 지하2~지상4층, 연면적 18,925m², 4개동
- ④ 주요시설 : 객실151실(일반객실 136실, 연수객실 10실), 연수 및 편의·체육 시설 등
 - 연수시설 : 객실(151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 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장, 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매점, 식당 등

-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, 2007년 이후 (주)HTC가 공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계속 운영해 오고 있음.

※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

구분	위탁기간	업체명	위탁금액	지원금액	비고
서천	'07.6.1~'10.5.31	(주)H·T·C	1,980백만원/년		
	'10.6.1~'13.5.31	(주)H·T·C	1,980백만원/년	-	
	'13.6.1~'16.5.31	(주)H·T·C	2,020백만원/년		

- 서울시는 서천연수원외에도 수안보연수원과 속초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
※ 속초수련원, 수안보, 서천연수원 운영현황

구 분	속 초	서 천	수 안 보
위 치	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	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74-87	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갈99
개원일자	'97. 3. 15('09.5.1 리모델링)	'07. 6. 26	'08. 7. 11
객 실 수	80실	151실(단체용 15실)	110실(단체용 10실)
운영업체	직영	민간위탁 - (주)H·T·C	민간위탁 - (주)오브이룸스
위탁비용	-	2,020백만원(년)	2,013백만원(년)
위탁기간	-	'13.6.1~'16.5.31(3년)	'14.6.1~'17.5.31(3년)
운영인력	33명(직원 14,공무17,축탁2)	48명/4팀(지원, 객실, 시설, 식음)	45명/4팀(지원, 객실, 시설, 식음)
건물규모	지하2층, 지상8층 (1동) 연면적 7,243㎡	지하2층, 지상4층 (4동) 연면적 18,925㎡	지하2층, 지상6층 (2동) 연면적 21,731㎡
부지면적	25,936㎡	97,684㎡	59,815㎡
교육시설	강당 (100석) 세미나실 1 (30석) 세미나실 2 (16석)	강당 (200석) 중강의실 1 (40석) 중강의실 2 (40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 (각 10석)	강당 (150석) 중강의실 1 (65석) 중강의실 2 (138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,4 (각 10석)
부대시설	사우나, 휴게실, 식당, 매점, 노래방, PC방, 테니스장 등	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	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

※ 속초수련원 인력현황 및 결산금액

(2016.1.18일 기준)

총계	공무원			공무직				축탁직
	소계	일반직	관리 운영직	계	청소	시설	경비	청소
33	14	9	5	17	9	6	2	2

※ 속초수련원 3년 결산금액(인건비 및 운영비 등)

- 2013년도 : 1,812백만원(인건비 1,096, 운영비 716백만원)
- 2014년도 : 1,899백만원(인건비 1,395, 운영비 503백만원)
- 2015년도 : 2,275백만원(인건비 1,675, 운영비 600백만원)

- 서천연수원 민간위탁은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계획이며,
- 집행부는 2016년 3월경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임.

위탁 운영 방안

- 위탁근거 : 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” 제10조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- 위탁기간 : 2016. 6. 1 ~ 2019. 5. 31 (3년)
- 위탁금액 : 연2,085백만원(월173백만원)
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결정
- 업체선정 : 공개경쟁입찰
 - (입찰참가자격)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직접경영 또는 위탁운영자, 제안서 설명에 참가한 업체, 계약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등
- 제안서 평가 :
 - 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”(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)에 의거 평가위원회(7~10명) 개최 및 심사기준 따라 적격업체 선정
 - 평가위원회 구성 : 외부전문가(학계, 업계) 및 유관부서 공무원참여
 - ※ 분야별 관련부서 보유 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선정 및 추천

나. 서천연수원 운영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.
- 역으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.

▶ 민간위탁의 장·단점

장 점	단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·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·기술성 제고 ·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·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종합적·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·공익성(공공성) 퇴색 ·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(사용료)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·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, 프로그램 개발 저조 ·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·노후화 촉진 ·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

- 집행부는 호텔(콘도) 등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.
- 대통령령인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제1항¹⁾에

1)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따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바, 서천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로서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, 민간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·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.

- 다만, 서울시연수원 이용 설문조사* 등의 결과를 보면, 직영으로 운영되는 속초수련원의 경우 직원들의 친근성 등으로 인해 일부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바,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문성,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 설문조사 결과

구 분	종합 만족도	속초	서천	수안보	조사기관
2012년도	84.1%	85.0%	84.4%	83.0%	한국갤럽 조사연구소
2014년도	87.8%	89.3%	86.7%	86.1%	자체조사 (전자설문시스템)

- 2012년도 조사대상 :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한 직원 총 900명
- 2014년도 조사대상 :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한 직원 총 3,016명

- 또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, 동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2)에 따라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② 생략

2) 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- 한편, 금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2016년 1월 7일에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사전 준비의 시간이 부족한 측면은 있다고 하겠으나,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부동의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체 방안이 필요한 바, 위탁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권한을 경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, 향후에는 신중한 검토 및 준비 등을 위해 충분한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이 제출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2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천연수원은 서울시 직원의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과 직원 및 가족의 휴양시설로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아 해 왔으며 2016. 5. 31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

나.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※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” 개정('16.1.7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위탁기간 : 2016. 6. 1 ~ 2019. 5. 31 (3년)
- 소요예산 : 연 2,085,240천원 (월 173,770천원)
 - ※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

나. 시설현황

-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
- 부지면적 : 97,684m²
- 건물면적 : 연면적 18,925m², 3개동
- 연수시설 : 객실(151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체력단련실, 당구장, 탁구장, 야외수영장, 사우나, 노래방, PC방, 매점, 식당 등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
- 연수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지원 운영 등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

〈 그간의 위탁경과 〉

- ▶ 서천연수원 개원 : 2007. 6. 26
- ▶ 최초위탁(1차) : '07.6.1~'10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2차) : '10.6.1~'13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- ▶ 재 위 탁(3차) : '13.6.1~'16.5.31 (수탁업체 : (주)HTC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연수원은 기관(부서)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시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인 바
-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- 서천연수원 운영관련 민간의 연수원 운영 경험 도입 등 ‘직영’ 보다 ‘민간위탁’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제안

※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」 (서울연구원, '06.10.1)